

등록번호	정책기획담당관-17005
등록일자	2015.11.16.
결재일자	2015.11.19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규제개혁팀장	정책기획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윤화용	이창조	임근래	조인동	11/19 문석진
협 조	주무관 김오녀			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3조	정책기획담당관	행정규제심사	규제신설없음	-
	감사담당관	부패영향평가	원안동의	-
	여성가족과	성별영향분석평가	원안동의	-

서 대 문 구
정책기획담당관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계획

구정 및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중요소송에 포함하여 행정심판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화된 행정 사건에 적극적 응소를 하고자 함

I 관련 근거

- 「행정심판법」 제18조(대리인의 선임)

II 개정 사유

- 구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증대됨에 따라 구정 및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중요소송 지정 사건에 포함
-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요건에 행정심판을 추가하여 복잡·다양화된 행정사건에 적극적 응소 할 수 있도록 지원
- 행정심판에서부터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심판 기속력으로 인한 행정 신뢰성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
- 중요소송 특별 승소사례금을 구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소송 및 행정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여 지급

III 개정내용 (안)

-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과 행정심판의 행정소송 절차 준용 조항 신설(안 제10조제5항)
- 중요소송 지정 사유에 행정심판 등을 포함하여 신설(안 제27조제4항)
- 소송 진행 상황에 따른 수입료 지급 기준 구체화(안 제28조제1항)
-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 기준을 최대 5천만원으로 변경하고, 소송과 행정심판으로 나누어 지급 기준안 설정(안 제29조제3항~제5항)

IV 타구현황

- 서울시 및 자치구별 소송사무등 처리규칙 현황

구분	소계	중요소송에 행정심판 등 문구가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
포함	5	서울시, 동대문구, 서초구, 성동구, 송파구
미포함	20	종로구 외 19구

- 자치구별 특별승소사례금 지급현황

소계	최고 1천만원	최고 3천만원	최고 5천만원	최고 6천만원	최고 1억원	소송물가액의 1%범위내	기타
25	1	4	3	1	7 (우리구)	6	2

V 향 후 일 정

- 입법예고 : 2015. 11월 (20일간)
-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상정 : 2015. 12월 중
- 공포·시행 : 2015. 12월 중

- 붙 임 1.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등의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
2. 입법예고문 1부. 끝.